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특정물질의 종류 등) 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제1종 특정물질의 종류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파괴지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제2종 특정물질의 종류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지구온난화지수는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포함된 특정 물질·혼합물에 들어 있는 특정물질은 제외한다.

1. 특정물질의 이성질체(異性質體)

2. 혼합물에 들어 있는 특정물질

3. 저장이나 운반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 내에 들어 있는 특정물질

④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 특정물질”이란 별표 2의 XI군에 속하는 특정물질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2 중 “별표 1의2”를 “별표 1 및 별표 2”로 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4(부담금의 산정기준)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의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의7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중 “1만분의 5”를 “1만분의 3”으로 하며, “100분의 5를”을 “100분의 3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 중 “별표 2”를 “별표 4”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종 특정물질 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 및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제2종 특정물질 부담금 부과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제조·판매되거나 수입되는 특정물질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24조5제4항에 따라 부과된 가산금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오존층 <u>보호</u>를 위한 특정물질의 <u>제조규제 등에</u>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오존층 <u>보호</u>를 위한 특정물질의 <u>제조규제 등에</u>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물질의 <u>종류와 오존 파괴지수</u>) ① 「오존층 <u>보호</u>를 위한 특정물질의 <u>제조규제 등에</u>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u>오존 파괴지수</u>는 별표 1과 같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에는	오존층 <u>보호 등을</u> 위한 특정물질의 <u>관리에</u>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u>보호 등을</u>-----<u>관리</u> <u>에</u>----- ----- -----. 제2조(특정물질의 <u>종류 등</u>) ① -- -----<u>보호 등을</u>--- -----<u>관리에</u>--- -- ----- --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제1종 특정물질의----- -----<u>오존과 파괴지수</u>는-----.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제2종 특정물질의 종류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지구온난화지수는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포함된 특정물질·혼합물에 들어 있는 특정물질은 제외한다.

1. ~ 3. (생략)

<신설>

제10조의2(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부과·징수대상자) 법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대상자는 별표 1의2의 특정물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한다.

제10조의4(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 파괴지수와 징수비율)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 파괴지수와 징수비율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0조의7(가산금) 법 제24조의5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일수 1일

-----.

1. ~ 3.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 특정물질”이란 별표 2의 XI군에 속하는 특정물질을 말한다.

제10조의2(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부과·징수대상자) -----

----별표 1 및 별표 2-----
-----.

제10조의4(부담금의 산정기준)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의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의7(가산금) ① 법-----

당 1만분의 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만분의 3-----
-----.

---100분의 3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별표 4-----
--.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 . >

제1종 특정물질 및 오존파괴지수 (제2조제1항 관련)

군	호	특정물질의 종류	화학식	오존 파괴지수
I	1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CFC-11)	CFCl_3	1.0
	2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CFC-12)	CF_2Cl_2	1.0
	3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CFC-113)	$\text{C}_2\text{F}_3\text{Cl}_3$	0.8
	4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CFC-114)	$\text{C}_2\text{F}_4\text{Cl}_2$	1.0
	5	클로로펜타플루오로에탄(CFC-115)	$\text{C}_2\text{F}_5\text{Cl}$	0.6
II	6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Halon-1301)	CF_3Br	10.0
	7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alon-1211)	CF_2BrCl	3.0
	8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Halon-2402)	$\text{C}_2\text{F}_4\text{Br}_2$	6.0
III	9	클로로트리플루오로메탄(CFC-13)	CF_3Cl	1.0
	10	펜타클로로플루오로에탄(CFC-111)	C_2FCl_5	1.0
	11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CFC-112)	$\text{C}_2\text{F}_2\text{Cl}_4$	1.0
	12	헵타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CFC-211)	C_3FCl_7	1.0
	13	헥사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CFC-212)	$\text{C}_3\text{F}_2\text{Cl}_6$	1.0
	14	펜타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CFC-213)	$\text{C}_3\text{F}_3\text{Cl}_5$	1.0
	15	테트라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프로판(CFC-214)	$\text{C}_3\text{F}_4\text{Cl}_4$	1.0
	16	트리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CFC-215)	$\text{C}_3\text{F}_5\text{Cl}_3$	1.0
	17	디클로로헥사플루오로프로판(CFC-216)	$\text{C}_3\text{F}_6\text{Cl}_2$	1.0
	18	클로로헵타플루오로프로판(CFC-217)	$\text{C}_3\text{F}_7\text{Cl}$	1.0
IV	19	사염화탄소	CCl_4	1.1
V	20	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클로로포름)	$\text{C}_2\text{H}_3\text{Cl}_3$	0.1
VI	21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HCFC-21)*	CHFCl_2	0.04
	22	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CFC-22)*	CHF_2Cl	0.055
	23	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31)	CH_2FCl	0.02
	24	테트라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21)	C_2HFCl_4	0.01-0.04
	25	트리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22)	$\text{C}_2\text{HF}_2\text{Cl}_3$	0.02-0.08
	26	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HCFC-123)	$\text{C}_2\text{HF}_3\text{Cl}_2$	0.02-0.06
	27	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HCFC-123)*	CHCl_2CF_3	0.02
	28	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HCFC-124)	$\text{C}_2\text{HF}_4\text{Cl}$	0.02-0.04
	29	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HCFC-124)*	CHFClCF_3	0.022

30	트리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31)	$C_2H_2FCl_3$	0.007-0.05
31	디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32)	$C_2H_2F_2Cl_2$	0.008-0.05
32	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HCFC-133)	$C_2H_2F_3Cl$	0.02-0.06
33	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41)	$C_2H_3FCl_2$	0.005-0.07
34	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41b)*	CH_3CFCl_2	0.11
35	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42)	$C_2H_3F_2Cl$	0.008-0.07
36	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42b)*	CH_3CF_2Cl	0.065
37	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51)	C_2H_4FCl	0.003-0.005
38	헥사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21)	C_3HFCl_6	0.015-0.07
39	펜타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22)	$C_3HF_2Cl_5$	0.01-0.09
40	테트라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HCFC-223)	$C_3HF_3Cl_4$	0.01-0.08
41	트리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프로판(HCFC-224)	$C_3HF_4Cl_3$	0.01-0.09
42	디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HCFC-225)	$C_3HF_5Cl_2$	0.02-0.07
43	디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HCFC-225ca)*	$CF_3CF_2CHCl_2$	0.025
44	디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HCFC-225cb)*	CF_2ClCF_2CHClF	0.033
45	클로로헥사플루오로프로판(HCFC-226)	C_3HF_6Cl	0.02-0.10
46	펜타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31)	$C_3H_2FCl_5$	0.05-0.09
47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32)	$C_3H_2F_2Cl_4$	0.008-0.10
48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HCFC-233)	$C_3H_2F_3Cl_3$	0.007-0.23
49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프로판(HCFC-234)	$C_3H_2F_4Cl_2$	0.01-0.28
50	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HCFC-235)	$C_3H_2F_5Cl$	0.03-0.52
51	테트라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41)	$C_3H_3FCl_4$	0.004-0.09
52	트리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42)	$C_3H_3F_2Cl_3$	0.005-0.13
53	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HCFC-243)	$C_3H_3F_3Cl_2$	0.007-0.12
54	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프로판(HCFC-244)	$C_3H_3F_4Cl$	0.009-0.14
55	트리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51)	$C_3H_4FCl_3$	0.001-0.01
56	디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52)	$C_3H_4F_2Cl_2$	0.005-0.04

	57	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 (HCFC-253)	$C_3H_4F_3Cl$	0.003-0.03
	58	디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 (HCFC-261)	$C_3H_5FCl_2$	0.002-0.02
	59	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 (HCFC-262)	$C_3H_5F_2Cl$	0.002-0.02
	60	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 (HCFC-271)	C_3H_6FCl	0.001-0.03
VII	61	디브로모플루오로메탄	$CHFBr_2$	1.00
	62	브로모디플루오로메탄 (HBFC-22B1)	CHF_2Br	0.74
	63	브로모플루오로메탄	CH_2FBr	0.73
	64	테트라브로모플루오로에탄	C_2HFBr_4	0.3-0.8
	65	트리브로모디플루오로에탄	$C_2HF_2Br_3$	0.5-1.8
	66	디브로모트리플루오로에탄	$C_2HF_3Br_2$	0.4-1.6
	67	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	C_2HF_4Br	0.7-1.2
	68	트리브로모플루오로에탄	$C_2H_2FBr_3$	0.1-1.1
	69	디브로모디플루오로에탄	$C_2H_2F_2Br_2$	0.2-1.5
	70	브로모트리플루오로에탄	$C_2H_2F_3Br$	0.7-1.6
	71	디브로모플루오로에탄	$C_2H_3FBr_2$	0.1-1.7
	72	브로모디플루오로에탄	$C_2H_3F_2Br$	0.2-1.1
	73	브로모플루오로에탄	C_2H_4FBr	0.07-0.1
	74	헥사브로모플루오로프로판	C_3HFBr_6	0.3-1.5
	75	펜타브로모디플루오로프로판	$C_3HF_2Br_5$	0.2-1.9
	76	테트라브로모트리플루오로프로판	$C_3HF_3Br_4$	0.3-1.8
	77	트리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프로판	$C_3HF_4Br_3$	0.5-2.2
	78	디브로모펜타플루오로프로판	$C_3HF_5Br_2$	0.9-2.0
	79	브로모헥사플루오로프로판	C_3HF_6Br	0.7-3.3
	80	펜타브로모플루오로프로판	$C_3H_2FBr_5$	0.1-1.9
	81	테트라브로모디플루오로프로판	$C_3H_2F_2Br_4$	0.2-2.1
	82	트리브로모트리플루오로프로판	$C_3H_2F_3Br_3$	0.2-5.6
	83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프로판	$C_3H_2F_4Br_2$	0.3-7.5
	84	브로모펜타플루오로프로판	$C_3H_2F_5Br$	0.9-14
	85	테트라브로모플루오로프로판	$C_3H_3FBr_4$	0.08-1.9
	86	트리브로모디플루오로프로판	$C_3H_3F_2Br_3$	0.1-3.1
	87	디브로모트리플루오로프로판	$C_3H_3F_3Br_2$	0.1-2.5
	88	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프로판	$C_3H_3F_4Br$	0.3-4.4
	89	트리브로모플루오로프로판	$C_3H_4FBr_3$	0.03-0.3
	90	디브로모디플루오로프로판	$C_3H_4F_2Br_2$	0.1-1.0
	91	브로모트리플루오로프로판	$C_3H_4F_3Br$	0.07-0.8
	92	디브로모플루오로프로판	$C_3H_5FBr_2$	0.04-0.4

	93	브로모디플루오로프로판	$C_3H_5F_2Br$	0.07-0.8
	94	브로모플루오로프로판	C_3H_6FBr	0.02-0.7
VIII	95	브로모클로로메탄	CH_2BrCl	0.12
IX	96	메틸브로마이드(다만, 수출입 농산물 검역용은 제외한다)	CH_3Br	0.6

- 참 고: 1) 1,1,2-트리클로로에탄은 제 V 군 제20호($C_2H_3Cl_3$)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오존 파괴지수(ODP)가 범위로 표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몬트리올의정서 목적상 범위 중 가장 높은 지수를 사용한다.
3) VI군 중 “*” 가 표시된 물질은 가장 상업성이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신설 2023. . . >

제2종 특정물질 및 지구온난화지수 (제2조제2항 관련)

군	호	특정물질의 종류	화학식	100년의 지구온난화 지수
X	97	1,1,2,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	CHF_2CHF_2	1,100
	98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a)	CH_2FCF_3	1,430
	99	1,1,2-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	CH_2FCHF_2	353
	100	1,1,1,3,3-펜타플루오로프로판(HFC-245fa)	$\text{CHF}_2\text{CH}_2\text{CF}_3$	1,030
	101	1,1,1,3,3-펜타플루오로부탄(HFC-365mfc)	$\text{CF}_3\text{CH}_2\text{CF}_2\text{CH}_3$	794
	102	1,1,1,2,3,3,3-헵타플루오로프로판(HFC-227ea)	$\text{CF}_3\text{CHF}_2\text{CF}_3$	3,220
	103	1,1,1,2,2,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cb)	$\text{CH}_2\text{FCF}_2\text{CF}_3$	1,340
	104	1,1,1,2,3,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ea)	$\text{CHF}_2\text{CHF}_2\text{CF}_3$	1,370
	105	1,1,1,3,3,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fa)	$\text{CF}_3\text{CH}_2\text{CF}_3$	9,810
	106	1,1,2,2,3-펜타플루오로프로판(HFC-245ca)	$\text{CH}_2\text{FCF}_2\text{CHF}_2$	693
	107	1,1,1,2,2,3,4,5,5,5-데카플루오로펜탄(HFC-43-10mee)	$\text{CF}_3\text{CHF}_2\text{CF}_2\text{CF}_3$	1,640
	108	디플루오로메탄(HFC-32)	CH_2F_2	675
	109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	CHF_2CF_3	3,500
	110	1,1,1-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a)	CH_3CF_3	4,470
	111	플루오로메탄(HFC-41)	CH_3F	92
XI	112	1,2-디플루오로에탄(HFC-152)	$\text{CH}_2\text{FCH}_2\text{F}$	53
	113	1,1-디플루오로에탄(HFC-152a)	CH_3CHF_2	124
XI	114	트리플루오로메탄(HFC-23)	CHF_3	14,800

부담금의 산정기준(제10조의4 관련)

1. 제1종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

부담금 = 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 1킬로그램의 가격(제조업자가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공장도가격으로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파괴지수 × 특정물질의 종류별 징수비율

제1종 특정물질의 종류별 징수비율은 다음과 같다.

군	호	특정물질의 종류	오존파괴지수	징수비율
I	1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CFC-11)	1.0	15%
	2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CFC-12)	1.0	
	3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CFC-113)	0.8	
	4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CFC-114)	1.0	
	5	클로로펜타플루오로에탄(CFC-115)	0.6	
II	6	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Halon-1301)	10.0	7.55%
	7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alon-1211)	3.0	3%
	8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Halon-2402)	6.0	5%
III	9	클로로트리플루오로메탄(CFC-13)	1.0	15%
	10	펜타클로로플루오로에탄(CFC-111)	1.0	
	11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CFC-112)	1.0	
	12	헵타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CFC-211)	1.0	
	13	헥사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CFC-212)	1.0	
	14	펜타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CFC-213)	1.0	
	15	테트라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프로판(CFC-214)	1.0	
	16	트리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CFC-215)	1.0	
	17	디클로로헥사플루오로프로판(CFC-216)	1.0	
	18	클로로헵타플루오로프로판(CFC-217)	1.0	
IV	19	사염화탄소	1.1	15.1%
V	20	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클로로포름)	0.1	15.4%
VI	21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HCFC-21)*	0.04	30%

22	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CFC-22)*	0.055
23	클로로플루오로메탄(HCFC-31)	0.02
24	테트라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21)	0.01-0.04
25	트리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22)	0.02-0.08
26	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HCFC-123)	0.02-0.06
27	디 클 로 로 트 리 플 루 오 로 에 탄 (HCFC-123)*	0.02
28	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HCFC-124)	0.02-0.04
29	클 로 로 테 트 라 플 루 오 로 에 탄 (HCFC-124)*	0.022
30	트리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31)	0.007-0.05
31	디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32)	0.008-0.05
32	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HCFC-133)	0.02-0.06
33	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41)	0.005-0.07
34	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41b)*	0.11
35	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42)	0.008-0.07
36	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42b)*	0.065
37	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51)	0.003-0.005
38	헥사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21)	0.015-0.07
39	펜 타 클 로 로 디 플 루 오 로 프 로 판 (HCFC-222)	0.01-0.09
40	테트라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 (HCFC-223)	0.01-0.08
41	트리클로로테트플루오로프로판 (HCFC-224)	0.01-0.09
42	디 클 로 로 펜 타 플 루 오 로 프 로 판 (HCFC-225)	0.02-0.07
43	디 클 로 로 펜 타 플 루 오 로 프 로 판 (HCFC-225ca)*	0.025
44	디 클 로 로 펜 타 플 루 오 로 프 로 판 (HCFC-225cb)*	0.033
45	클로로헥사플루오로프로판(HCFC-226)	0.02-0.10
46	펜타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31)	0.05-0.09
47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 (HCFC-232)	0.008-0.10
48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 (HCFC-233)	0.007-0.23
49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프로판 (HCFC-234)	0.01-0.28
50	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HCFC-235)	0.03-0.52
51	테 트 라 클 로 로 플 루 오 로 프 로 판	0.004-0.09

		(HCFC-241)		
	52	트리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 (HCFC-242)	0.005-0.13	
	53	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 (HCFC-243)	0.007-0.12	
	54	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프로판 (HCFC-244)	0.009-0.14	
	55	트리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51)	0.001-0.01	
	56	디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52)	0.005-0.04	
	57	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HCFC-253)	0.003-0.03	
	58	디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61)	0.002-0.02	
	59	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62)	0.002-0.02	
	60	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71)	0.001-0.03	

2. 제2종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

부담금 =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 1킬로그램의 가격(수입업자가 세관에 신고한 수입가격을 말한다) × 특정물질의 종류별 지구온난화 지수 × 특정물질의 종류별 정수비율

제2종 특정물질의 종류별 정수비율은 다음과 같다.

군	호	특정물질의 종류	100년의 지구온난화 지수	정수비율
X	97	1,1,2,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	1,100	0.00074%
	98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 (HFC-134a)	1,430	
	99	1,1,2-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	353	
	100	1,1,1,3,3-펜타플루오로프로판 (HFC-245fa)	1,030	
	101	1,1,1,3,3-펜타플루오로부탄 (HFC-365mfc)	794	
	102	1,1,1,2,3,3,3-헵타플루오로프로판 (HFC-227ea)	3,220	
	103	1,1,1,2,2,3-헥사플루오로프로판 (HFC-236cb)	1,340	
	104	1,1,1,2,3,3-헥사플루오로프로판 (HFC-236ea)	1,370	
	105	1,1,1,3,3,3-헥사플루오로프로판	9,810	

		(HFC-236fa)		
	106	1,1,2,2,3-펜타플루오로프로판 (HFC-245ca)	693	
	107	1,1,1,2,2,3,4,5,5,5-데카플루오로펜탄 (HFC-43-10mee)	1,640	
	108	디플루오로메탄(HFC-32)	675	
	109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	3,500	
	110	1,1,1-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a)	4,470	
	111	플루오로메탄(HFC-41)	92	
	112	1,2-디플루오로에탄(HFC-152)	53	
	113	1,1-디플루오로에탄(HFC-152a)	124	
XI	114	트리플루오로메탄(HFC-23)	14,800	0.00074%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1호	75	150	300

나.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호	125	250	500
다. 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3호	150	225	300
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4호	150	225	300
바.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 제2호	125	250	500